

블랙리스트 3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(요약)

- 원고 : 김서령 외 15
- 피고 : 1. 대한민국, 2. 박근혜, 3. 김기춘, 4. 조윤선, 5. 김종률, 6. 김소영
7.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8. 영화진흥위원회, 9. 한국콘텐츠진흥원
- 청구취지 :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.
- 청구원인(요지)

1. 사건의 개요 (보다 상세한 것은 첨부한 '소장' 참조)

- ▷ 2014. 4. 이후 청와대 및 비서실 주도로 정부비관적 문화예술인 명단 작성 관리
- ▷ 2014. 7. ~ 8.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,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관주 등이 주도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.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. 문체부는 예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.
- ▷ 2016. 10. 도종환 국회의원,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.
- ▷ 2016. 11. 한국일보 -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명 보도
- ▷ 2016. 12. SBS -블랙리스트 일부 명단 보도
- ▷ 2017. 1. 23. -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
- ▷ 특검 피고 박근혜, 김기춘, 조윤선 및 김종덕 등 구속 기소

나.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.보유.이용 - 블랙리스트의 내용과 관리 현황

- ▷ 2016. 10. 12.자 한국일보 “세월호 선언 등 9,473명,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”
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,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,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인 6,517명, 박원순 지지 선언 문화인 1,608명 등 다수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함.

2. 블랙리스트의 불법적 활용 사례 -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지원 배제

가. '한국문화예술위원회(아르코)문화창작기금 선정' 배제 - 2015. 9. 11.자 한겨레
신문

나. 부산국제영화제 '다이빙 벨' 검열 사례

다.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강릉씨네마테크,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례

라. 기타

남○○ - (복권)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- 지원배제

차○○ 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- 선정배제

김○○ -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- 지원배제

3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헌법 제10조, 제17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

나. 양심의 자유 침해

다.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

4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·관리 및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,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우선 일부금으로 100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.

원고들이 실제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법한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그 지원 가능하였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음. 이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.

5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람.